

(의안번호 제1097호)

2021. 10. 12.(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발의일자 : 2021. 9. 24.
- 발 의 자 : 경상남도지사
- 회부일자 : 2021. 9. 27.

### 2. 제안이유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분리·제정(제4932호, 2021. 4. 1.)하였으나 문화재청 권고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준용규정 및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4조)
- 나. 도지정문화재의 지정대상 및 기준,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6조)
- 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절차 규정 개정(안 제17조)
- 라.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26조)
- 마.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신설(안 제27조)
- 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허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8조~제31조)

- 현상변경·보존행위·촬영·반출에 관한 허가사항, 허가절차 및 대상 행위 사항
- 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각종 사유발생 시 신고 사항 신설 (안 제33조)
- 야. 문화재 현상, 관리, 수리 등 정기조사 및 재조사 위탁 기관 신설 (안 제34조)
- 자. 문화재 공개·공개 제한과 공개 제한 시 고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7조)
- 차. 문화재 등록 등 도등록문화재 제도 신설(안 제39조~제45조)
  -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기술 지도, 신고 사항,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견폐율과 용적률 등, 준용에 관한 사항
- 카. 시장·군수가 도문화재 관리 등 사유 발생 시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4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합 의 : 가야문화유산과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1. 9. 9. ~ 2021. 9. 23.

나) 제출의견 : 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6) 지역인재고용영향평가 : 의견없음

## 5. 전문위원 검토 내용

### 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2015. 3.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2016. 3.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 4. 1. 경상도에서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및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분리·제정하였으나,
- 문화재청 권고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준용규정 및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합동평가 대상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대상 법령 통보」(’21.1.25.)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도 조례로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나.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4조(전문위원)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학과의 조교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을 신설하여 전문위원 위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16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부터 안 제1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등)까지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지정대상 및 기준, 세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절차사항을 규정함

- 안 제26조(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부터 안 제37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에 따라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권고사항에 따라 법 제74조제2항의 문화재보호법 준용규정을 반영함.

**<준용규정 및 조례위임 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②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지정의 해제) 제1항-제4항, 제32조(임시지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5조(허가사항)제1항, 제36조(허가기준),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40조(신고사항), 제42조(행정명령),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를 준용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손실의 보상)제3호, 제49조, 제53조(시도 등록문화재의 등록), 제54조(시도 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시도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제56조(시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시도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까지 및 제81조를 준용

■ 「문화재보호법」 조례 위임 사항은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이며, 법 시행령 조례 위임 사항은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임

- 안 제26조(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는 법 제14조의4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금연구역·흡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등을 신설 규정함

- 안 제2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는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이나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함
- 안 제28조(허가사항)부터 안 제31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까지 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행위·보존행위·촬영행위·반출행위에 관한 허가사항, 허가절차 및 대상 행위 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함
- 안 제3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는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각종 사유발생 시 신고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는 문화재 현상, 관리, 수리 등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도지정 문화재의 공개 등)는 문화재 공개·공개제한과 공개제한 시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 안 제39조(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부터 안 제45조(준용 규정)까지 법제처 합동평가대상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대상 법령 통보」(21.1.25.)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기술 지도·신고 사항·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건폐율과 용적률 등·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함
- 안 제46조(보고 등)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가 보고토록 신설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문화유산은 우리겨레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의 자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령에 규정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므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규정된 사항과 기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 권고\* 사항과 시·도 등록문화재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비토록 하는 법제처 합동평가대상\*\*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지표대상 법령 통보」( '21.1.25.)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문화재청 권고내용 및 법제처 합동평가 대상>

\* (문화재청 권고내용) ① 「문화재보호법」제74조(준용규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sup>1)</sup>**와 **문화재자료<sup>2)</sup>**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규정을 준용하고 ② "대통령령"은 "시·도 조례로" 봄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함 ('21.4.1. 권고 사항 송부)

\*\* (법제처 합동평가대상) 「문화재보호법」제74조(준용규정) 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 (**시·도등록문화재<sup>3)</sup>**)의 신고사항), 제56조(시·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1항제1호 및 제2항은 법령위임 사항으로 조례 적기 정비('18.12.24. 조문 신설, '19.12.25. 조문 시행)

1) 도지정문화재: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2) 문화재자료: 법 제70조제2항에 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3) 도등록문화재: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문화재

-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문화재청 권고사항 1부.
  3. 경상남도 문화재 현황 1부.
  4. 비용추계서 1부.

**□ 문화재위원회 규정**

-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설 2009. 4. 6., 2010. 12. 31.>

**□ 문화재보호법**

-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7. 3. 21.]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3. 27.>

③ 삭제 <2015. 3. 27.>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27.>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⑦ 삭제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32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8. 6. 12.>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

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

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1.28>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⑧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협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

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 <2015. 3. 27.>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8.>

**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문화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 12. 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59조(준용 규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17. 3. 21., 2018. 12. 24., 2020. 12. 8.>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8.>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 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 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0. 6.>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포획(捕獲)·채취·사육·도살(屠殺)하는 행위
  - 나.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바.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
  - 사. 매장·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9. 7. 2.>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4. 12. 23.]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6.,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 행위
-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12. 23.]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 12. 23.]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

면 된다. <개정 2014. 12. 23.>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31.>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 가.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 나.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 [본조신설 2014. 12. 23.]

[제목개정 2019. 12. 31.]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제목개정 2019. 12. 31.]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견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0. 12. 4.>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4.]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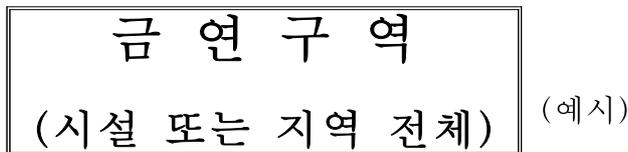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9. 12. 24.>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붙임딱지)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2) 스티커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나) 스티커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 1)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 3)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5)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6)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권고사항

(문화재청/보존정책과/행정사무관/길태현/042-481-4835)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단체에 관한 사항</li> <li>○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li> <li>○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li> <li>○ 관리를 위한 지시에 관한 사항</li> <li>○ 정기조사 및 직권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시·도 조례로” 봄에 따라,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야 함.</li> <li>- 따라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중 <u>조례 전부 개정안에 삭제된 조항에 대하여 규정 존치가 필요</u></li> </ul>

□ **국가문화재 및 도문화재**

(기준 : '21. 9월말, 출처 : 문화재청 통계자료)

시 군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2,303	398	14	184	54	12	46	19	12	57	1,905	891	41	269	21	683
창원시	292	26		8	4		1	2		11	266	189	6	31		40
진주시	254	44	3	28	2		4	1		6	210	98	8	17	1	86
통영시	81	41	1	3	4	1	5	7	2	18	40	17	0	12		11
사천시	59	11		4	1		3	2		1	48	16	3	16	1	12
김해시	99	20		9	9		2				79	36	3	14		26
밀양시	165	23	1	9	1	1	3	1	1	6	142	57	4	15		66
거제시	49	7			2	1	2			2	42	6		28		8
양산시	259	43	1	32	6		1	2		1	216	162	2	9	1	42
의령군	73	10		3			5			2	63	15	2	16	2	28
함안군	72	9		2	3		3		1		63	20	3	11	1	28
창녕군	114	25	2	12	5		1	2	2	1	89	31		11	1	46
고성군	86	12		5	2		2	2		1	74	26		14	3	31
남해군	96	14		3	2	3	5			1	82	19	1	14	1	47
하동군	106	18	1	12	2		3				88	44		12		32
산청군	109	17	1	10	3					3	92	29		15	3	45
함양군	110	20		7	3	3	4		2	1	90	41	3	10	2	34
거창군	92	16		6	2	2	1		2	3	76	24	5	6	4	37
합천군	186	42	4	31	3	1	1		2		144	61		18	1	64
기타	1										1		1			

※ 통계기준 : 문화재 부여호 현황, 기타 :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가 양 시군(진주시, 산청군) 있음.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관련 의견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규정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발생 비용은 없음.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가야문화유산과장 김 옥 남